

연말정산 및 급여담당자를 위한 HIT MAILING 1

기부금 공제순서 및 세액공제액 계산 변경안내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기부금 공제순서 및 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이 변경되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1 기부금 공제순서의 변경

변경사유

시행규칙 위임에 따른 서식순서대로 공제순서를 변경함으로써 법에 명문화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

2016년 귀속 연말정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p>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법정기부금 → ③ 당해연도 법정기부금 → ④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법정기부금 → 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⑥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⑦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⑧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⑨ 당해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⑩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⑪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p>	<p>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당해연도 법정기부금 → ③ 2014년이후 이월 법정기부금(2014→2015→2016)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⑤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⑥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⑦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⑧ 2014년이후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014→2015→2016) → ⑨ 당해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⑩ 2014년이후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14→2015→2016)</p>

2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식 변경

(1) 세액공제액 계산 방식 변경

변경사유

계산방식의 단순화 및 공제순서와 일치 필요성.

2016년 귀속 연말정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p>법정 · 우리사주조합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 후 각각의 공제대상금액 비율대로 세액공제액을 안분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 : 30%	<p>공제순서(법정→우리사주→지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2천만원 초과 여 · 부를 판단하여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부터는 30% 적용.</p>

실무적용 참고사항

공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며, 2천만원이 초과하는 시점의 해당 기부금부터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YOUR BEST HRD PARTNER
씨에프오아카데미
www.cfol.kr



교육

문의

TEL
(02)

501-2322

FAX
(02)

561-6581

(2) 2014년 ~ 2015년 법정지정기부금 이월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 변경

변경사유

업무효율성보다 법적 안정성 측면 고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14년 ~ '15년 이월 법정 ·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 발생연도 구분없이 상기의 세액공제율(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적용.	'14년 ~ '15년 이월 법정 ·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 발생연도의 세액공제율(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적용.
실무적용 참고사항 <p>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14~'15년 이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4~'15년 이월 기부금에 한하여 15%의 세액공제율(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25%) 적용. <u>따라서 기부금 발생연도별 개별관리의 중요성 증대.</u></p>	

3

법정 · 우리사주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 이 되는 경우의 공제순서 변경

변경사유

적용순서를 기부금 공제순서로 일원화

2016년 귀속 연말정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세액이 “0” 이 되는 시점의 세액공제액을 환산하여 “환산공제대상금액”을 계산· [환산공제대상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배부)· [공제(배부)]된 공제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안분계산.	결정세액이 “0” 이 되는 시점까지 공제순서(법정→우리사주→지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제.

실무적용 참고사항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므로, 이월시킬 기부금은 세액공제액을 역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16년이후 기부금과 '14년 ~ '15년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상이하므로 기부금 연도별 관리 필요성 증대.

씨에프오아카데미에서는 사전에 기부금세액공제 계산방식의 변경이 예상되어 해당 기부금세액 공제계산의 변경 사항을 교재에 정확히 반영함으로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재 출판이 미루어진 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미 수강하신 (2017년 11월 7일 ~ 10일 사이) 고객분들께는 향후 개별 발송해드릴 예정이며, 이후 진행되는 과정부터는 정상적으로 제공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YOUR BEST HRD PARTNER
씨에프오아카데미
www.cfoi.kr



교육 TEL (02) 501-2322 FAX (02) 561-6581